#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97 제출년월일 : 2023. 3. 2.

제 출 자:평창군수

#### 1. 제안이유

병역명문가의 정의와 예우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, 실질적인 우대 근거 마련을 위하여 다른 조례의 관련 부분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병역명문가, 예우대상자 정의 명확화 (안 제2조)

나. 적용범위 확대 (안 제3조)

다. 실질적 우대 근거 마련 (안 제7조)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문화관광과, 보건의료원 협의 완료 (2022.8월)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2.11.24.~2022.12.13) 결과, 의견제출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- 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반영
- 5)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 : 개선사항 없음

####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#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병역명문가"란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에 따라 3대 (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,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)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.
- 2. "예우대상자"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3. "예우대상자 가족"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

#### 제3조(적용범위)

- 1. 이 조례는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.
- 2. 다른 시·군·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.
- 제4조(군수의 책무)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제5조(병역명문가 지원)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.
- 제6조(예우 및 홍보)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.
  - 1.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
  - 2.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
  - 3. 「평창군포상조례」에 따른 포상
  - 4.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
  - 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우대)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- 1. 보건의료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(비급여는 제외)
- 2. 군이 운영하는 관광지 입장료
- 3. 군이 운영하는 주차장 이용료
-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제8조(협조 요청)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9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군수는 군에서 설치, 관리,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 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 2조 및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」을 준용한다.
- 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「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[별표2]의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라. 「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의 외래진료비(비급여 제외): 면제
- ② 「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 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「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,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,「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.

④ 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0호부터 제11호를 제11호부터 제12호로 하고,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0. 「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⑤ 「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제1호 마목부터 아목을 바목부터 자목으로 하고,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마. 「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
- ⑥ 「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2항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바. 「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

# 관계법령

#### □ 병역법

제82조(병역의무 이행의 장려)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(宣揚)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.

#### □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

제20조(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)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- 1.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
- 2. 주민자치센터,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우대
- 3.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·배포
- 4.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비용발생 없음.

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 중 제2호

## 3. 미첨부 사유

비용발생 없음.

## 4. 작성자

| 작성자 | 평창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|
| 연락처 | (033) 330 - 2150 |